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905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원 고 [redacted]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피고1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피 고 2. [redacted]군수

3.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피고3보조참가인 [redacted]광역시장

피 고 4.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11.

주 문

1. 피고 [redacted]특별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11,507,068,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redacted]군수,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광역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취득세에 대하여 피고 [redacted]군수가 2012. 10. 26.에 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2. 10. 17.에 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2012. 10. 31.에 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본점소재지가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이다.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에 대하여 "[redacted]군[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 "[redacted]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redacted]를 각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하고, 피고 [redacted]군수,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의 위 등록된 사용본거지는 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지가 될 수 없고,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경 피고 [redacted]군수,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와 같은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으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 [redacted]군수,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 [redacted]군수,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에 2011. 1. 1. 이후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각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지방세법'으로,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자동차등록령'으로,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자동차등록규칙'이라 한다].

3.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가. 관계 법령의 검토

1)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자동차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의 관할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관할하지만,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구 자동차등록법 제5조, 구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 제2항), 자동차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수 있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이다(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따라서 사용본거지가 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사용·보관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령은 위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의 일정한 장소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면서도(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 이 때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다(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항).

그런데 원고와 같은 자동차시설 대여업자의 경우 리스이용자를 위하여 리스이용자가 원하는 차량을 대신 구매한 후 리스기간 동안 일정한 리스이용료를 지급받을 뿐이고, 사실상 이용자가 처음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게 된다. 위 자동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사용본거지이므로 이용자가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사용본거지로 할 수는 없고, 자동차시설 대여업자는 리스계약에 따라 필요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직접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물리적인 보관·관리 또는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를 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자동차시설 대여업자의 경우 사용본거지란 자동차 등록, 리스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의 처리,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통지서의 수령 및 납부, 리스계약의 해지, 리스계약 종료시 차량의 인수 등 자동차 소유자 및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라 보아야 한다. 실제 그와 관련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면 사용본거지가 될 수 있고, 그 곳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증명되는 지점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등도 될 수 있다(사용본거지로 등록되면 등록관청이 이러한 곳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한 것이 된다).

3) 한편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신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등록신청의 내용이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즉 신청한 사용본거지가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자동차등록령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호). 등록관청이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적법한 사용본거지가 아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에게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구 자동차등록령 제33조). 등록관청이 신청을 수리하여 이루어진 등록에 대하여 착오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경정등록을 할 수 있고(구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항).

4) 차량은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4항). 차량을 취득하면 먼저 납세지를 결정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납세지가 등록지와 다를 경우에는 그 곳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 소재지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지점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할 수 있고,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곳이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규 차량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한 사용본거지가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그 신청이 수리되어 차량의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등록원부의 기재된 사용본거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등록신청이 잘못 수리된 것이 발견되는 등 직권 또는 이의신청이나 쟁송에 의하여 수리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본거지로 등록원부에 등록된 곳이라면 그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득세 납세지의 결정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사용본거지로서 존재하면 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고, 그 후 변경등록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8. 3. 3.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에, 2008. 5. 20.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가 [redacted]에, 2010. 12. 17.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에 각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등록을 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위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사용본거지에 위 지점 주소가 기재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등록차량에 대하여 위 지점 소재지인 [redacted]군, [redacted]구, [redacted]구를 납세지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④ 위 지점에서 원고가 각 리스차량의 소유자 또는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하게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사실(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위 지점이 가공의 지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그 후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직권 또는 쟁송에 의하여 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선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납부 당시 각 차량의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는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원고는 그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납부 역시 유효하다.

한편 피고 강남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사용본거지로 신고한 장소는 차량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사용본거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가 등록당일 또는 수일 내에 차량들의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사용본거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자동차시설 대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업장, 지점 소재지도 자동차 소유자 및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라면 사용본거지로 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사용본거지에 피고 [redacted]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이 주장하는 정도의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등록관청이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였고, 아직까지 말소등록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관청이 그러한 장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자동차등록법령이 그러한 설비를 요구하거나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러한 등록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을 하고, 등록 당시 처음부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자동차등록령 제33조, 제43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redacted]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이 아니라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redacted]군', '[redacted]구', '[redacted]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등록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등록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이의신청 등을 통한 시정절차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는 여전히 취득세 납세지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redacted]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차량들의 납세지가 [redacted]군, [redacted]구, [redacted]구가 될 수 없다는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제에서 이루어진 원고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 [redacted]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redacted]군, [redacted]구, [redacted]구를 납세지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러한 신고·납부가 유효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 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제13조(말소등록)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제28조(이의신청)

①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경정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면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등록이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른 등록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④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 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삭제 <2010.6.11>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끝.